

EY한영 월간 Public Policy Newsletter

2026년 6월호

발행일 | 2026년 6월 17일

In Focus

- + 금융위,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유인대폭 강화..지난달 26일부터 개정 시행령 시행 [\(바로가기\)](#)
- + 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10사 표창...주기적 지정감사유예 신청 접수는 이달 22일 마감 [\(바로가기\)](#)
- + G20 금융감독기구, 엔트로픽에 '미토스' 사이버 리스크 직접 브리핑 요청...글로벌 금융안정 이슈로 부상 [\(바로가기\)](#)
- + 미국, 새로운 AI 모델 공개 전 정부사전 검토체계 확대...빅테크 AI 개발출시 관행 변화 전망 [\(바로가기\)](#)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Contents

01	국내 업데이트	3
	1. 회계감사제도 및 기업회계기준	
	▪ 금융위,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유인 대폭 강화...지난달 26일부터 개정 시행령 시행	4
	▪ 증선위, '25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의결	6
	2. 자본시장	
	▪ 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10사 표창...주기적 지정감사 유예 신청 접수는 이달 22일 마감	7
	▪ 금융위, 혁신 기업에 금융권 자본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성과 점검...에너지 산업 대전환 속 금융 역할 강화 주문	9
	3. ESG·지속가능성	
	▪ ESG기준원, '26년 1분기 정기주총 의안분석 결과 발표...상법 개정 인한 '정관 변경' 안건 다수 상정	11

02 | 해외 업데이트 13

1. ESG·지속가능성

- EU 집행위, 간소화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공식 채택 앞뒤 14
- EU, 수입품 탄소비용에서 'EU 역외 기지불 비용 공제' 기준 구체화 15

2. 기술·디지털

- G20 금융감독기구, 엔트로픽에 '미토스' 사이버 리스크 직접 브리핑 요청...글로벌 금융안정 이슈로 부상 16
- 미국, 새로운 AI 모델 공개 전 정부 사전 검토 체계 확대...빅테크 AI 개발·출시 관행 변화 전망 17
- 영국·캐나다, 'AI 주권'에 각각 1조원 안팎 투자...한국은 오는 3분기 2.5조원 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착공 18
- EU 입법기구, '인공지능법' 간소화에 합의...중복 규제 제거하고 의무 준수기한 최대 16개월 연장 19
- 미 캘리포니아·중국, AI가 밀어내는 일자리에 노동자 보호 움직임 21

03 | 주목할 간행물 22

01

국내 업데이트

금융위,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유인 대폭 강화...지난달 26일부터 개정 시행령 시행 In Focus

5월 21일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회계부정 내부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회계부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

이번 개정은 올해 2월 [발표](#)한 포상금 지급제도 개선방안과 지난해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임. (본 뉴스레터 2026년 3월호 “금융위·금감원, ‘주가조작·회계부정 포상금 제도’ 개선...지급상한 폐지하고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포상방침” 및 2025년 9월호 “금융위, 증선위 3대 중점 운영방향 발표...내년 상반기 ‘회계부정 엄정 제재’ 시행 시 과징금 회사 1.5배·개인 2.5배 증가 예상” 참고)

개정된 각 시행령은 5월 2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포상금 지급제도에는 개선안 발표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추가 변경사항도 포함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외감법 시행령 개정)



-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상한액 30억원을 전면 폐지
 - ‘부당이득 등의 30%(기준금액) × ‘신고자의 적발·제재 기여율(백분율 계산)’ = 실제 지급액
- ‘어디에 신고하든’ 포상금 지급
 -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해도 금융위, 금융감독원으로 이첩하거나 공유해 포상금 지급
- 부정행위 가담자가 신고해도 포상¹ new
 - 타인에게 범죄 참여를 강요했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에 가담했던 신고자에게도 일정한 수준의 포상금 지급 가능
- 포상금 선지급 제도 운영 new
 - 포상금은 불복절차가 끝나고 과징금 등이 확정 납입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소송 등으로 과징금 등의 국고 납입이 지연되거나 납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예정액의 일부(10%, 상한 1억원)를 먼저 지급 가능
- 몰수·추징 원금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 new
 - 불공정거래 행위 중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²에도 기준금액(30%)에 기여율을 곱해 포상금 지급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기존에는 가담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었음.

² 시세조종 이외에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원금이 몰수·추징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을 올해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임.

회계부정 제재 강화 (외감법 시행령 개정)



-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 시 과징금 가중
 - 기존: '17년 회계부정 과징금 도입 이래, 과징금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해왔음
 - 개정: 위반 동기별(고의·중과실)로 위반한 사업연도의 수를 감안해 매년 20%~30% 가중함
-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 과징금 부과
 - 기존: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한 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려웠음¹
 - 개정: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와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경제적 이익의 객관적 산출이 어려울 시 최저 기준금액 1억원 적용)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0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해외에서 많이 하듯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상당액을 주어 평생 팔자 고칠 만큼 받을 수 있게 하면 억제 효과와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발언](#)함.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위법행위 조기 적발과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¹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했기 때문.

증선위, '25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의결

6월 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25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다고 발표함. 감독당국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감사 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함.

구분	'21년 (13개 회계법인)	'22년 (17개 회계법인)	'23년 (14개 회계법인)	'24년 (14개 회계법인)	'25년 (10개 회계법인)
평균 지적 건수	14.4건	10.5건	9.1건	8.7건	8건

<연도별 품질관리 감리 평균 지적 건수>

출처: 금융위원회

10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지적 건수는 총 80건으로, 구성요소별로는 업무의 수행¹(20건, 25%)이 가장 많았으며, 리더십 책임(18건, 22.5%), 인적자원(17건, 21.3%), 윤리적 요구사항(14건, 17.5%), 업무 수용과 유지(8건, 10%), 모니터링(3건, 3.7%) 순으로 나타남.

감리 결과 발견된 개선권고사항은 개선권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임.

¹사전심리 절차 미준수, 감사조서 관리 미흡 등

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10사 표창...주기적 지정감사 유예 신청 접수는 이달 22일 마감 In Focus

5월 27일 한국거래소가 지난 1년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좋은 성과를 거둔 10사를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

거래소는 2025년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제출한 기업 131사 중 충실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기업들을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올해는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금 규모를 확정하여 투자자가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실제 배당에 이를 적용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함. (본 뉴스레터 2026년 4월호 "거래소, 배당절차 개선 기업에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참고)

	기존	개선
	배당받을 주주 먼저 확정 → 배당액 확정	배당액 먼저 확정 → 배당받을 주주 확정
결산배당 상법 제354조 법무부 유권해석 ('23.1월 배포)	- 기업들은 통상 12월 말일을 주총 의결권 기준일(주총에서 투표권 있는 주주 명단 확정일)이자 배당 기준일(배당받을 주주 명단 확정일)로 정함 - 이에 따라 배당받을 주주가 정해진 후인 다음 해 3월 정기주총에서 배당 여부 및 배당액이 확정됨	- 기업이 정관 개정을 통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 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하도록 유도함 - 이 경우 주총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이 결정되고 난 후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됨
상장사 분기배당 자본시장법 개정 ('24.12월 개정)	- 상장회사는 3·6·9월 말일이 배당 기준일 - 그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하여 배당할 수 있음	3·6·9월 말일 현재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함 - 따라서 기업은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배당절차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

이번에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받은 10사는 다음과 같음.

경제부총리상

- 키움증권
- 한국항공우주

금융위원장상

- 코웨이
- 티씨케이 (코스닥)
- 한국금융지주

한국거래소 이사장상

- 에스티팜 (코스닥)
- 우리금융지주
- 지역난방공사
- 한솔케미칼
- LG이노텍

» 다음 페이지에 계속



또한 거래소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 103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9%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했다”고 답했으며, 87%는 “한국 증시 상승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답했다고 밝힘.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이들 기업에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고 있는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2)」에 따르면 이번에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받은 10사는 주기적 지정 유예 심사 시 가점¹을 받을 수 있게 됨. (본 뉴스레터 2025년 1월호 “금융당국,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3년 유예...신외감법 시행 이후 지정감사 1년 이상 받은 경우 신청 가능” 참고)

지난 4월 말 금융감독원이 [게시](#)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올해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주기적 지정 유예 대상)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22일까지 금감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9월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됨.



<‘26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 일정>

출처: 금융감독원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해 9월에는 총 3사가 [선정](#)돼 주기적 지정 유예 혜택을 받았으며, 그중 2사의 가점 요인에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이 포함²된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5년 9월호 “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결과 발표...케이티앤지·KB금융 지주현대차증권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참고)

¹ 회계투명성,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6월 1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받은 외부 포상 또는 표창은 50점 이내에서 포상이나 표창의 종류 및 훈격에 따라 가점이 부여됨.

² 이 밖에도 ESG기준원 지배구조 우수등급, 회계의 날 정부포상이 가점 부여 사유로 언급됐으며, 나머지 1사는 자금세탁방지 우수표창으로 가점을 부여받음.

금융위, 혁신 기업에 금융권 자본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성과 점검...에너지 산업 대전환 속 금융 역할 강화 주문

5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민간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를 점검하고 ▲에너지 산업의 변화에 따른 금융의 역할 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발표](#)함. 이번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지주사 및 증권사·보험사·은행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 컨설팅그룹 금융·에너지 파트너 등이 참석함.

배경

- 지난해 9월 금융위는 부동산 등 가계대출 분야에 상당 부분 묶여 있는 시중 자금이 첨단산업과 벤처, 소상공인 등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게 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함. 당시 이석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5년 10월호 "금융위,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참고)
- 이를 위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4개 정책금융기관¹에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 시행,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² 하한 상향(15% → 20%) 및 은행권 주식 위험가중치(RW) 하향, 대형 IB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모험자본 공급³ 의무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함.
- 올해 1월 금융위는 제1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개최](#)하여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함.

이번 4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생산적 금융 추진 성과 ('26.3월 말 기준)

- 민간 금융권 자금이 점진적으로 생산적 분야로 이동 중
 - 5년에 걸친 약 1242조원의 공급 계획 중 92조원 공급 완료
 - 5대 금융지주와 산업은행·기업은행의 '기업 대출' 및 '투자' 잔고가 '25년 6월 말 대비 95조원 증가한 1877조원을 기록해, 전체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8.6%로 0.8%p 증가

에너지 산업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금융의 역할 변화

-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탄소중립, 에너지안보라는 세 축 아래 에너지는 '대규모 설비·인프라 산업'으로 변화하는 한편, 전략적 비축과 핵심기술 국산화 등 공급망 관점에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장기·모험·인프라 자본과 ▲정부재원과 민간금융 협업을 통한 혼합금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지역 편중⁴을 고려해 에너지 수요·공급 간 연결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²은행이 보유한 자산이 부실해질 수 있는 위험 정도를 수치화한 비율로, 주택담보대출금에 주담대 RW를 곱하면 이 항목의 위험가중자산(RWA)이 됨. RWA 총규모가 클수록 은행 자본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RWA x 100)이 낮아지므로, 은행 입장에서 부동산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이 전보다 덜 매력적으로 보일 유인을 만든 것.

³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성장을 지원

⁴'23년 에너지 자급률(공급/전력): 수도권 0.66(초과수요), 비수도권 1.34(초과공급)

이번 회의에 참석한 컨설팅그룹은 AI 확산으로 신규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민간 자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금융지주사, 증권사, 보험업권, 정책금융기관은 각각 관련 지원 방안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함.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금융권과 정부가 추진해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함.

생산적 금융 역량 내재화를 위한 4대 과제

- [금융권] 생산적 금융 관련 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증하는 체계 마련
- [금융권] 매년 4분기에 금융회사 스스로 생산적 금융 추진 실적에 대한 자세한 팩트북(백서 또는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개
- [금융권] 산업 연구 역량 제고, 조직·인력 확충 및 KPI 반영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문화로 정착
 - [정부 지원책] ▲국민성장펀드 운영 ▲규제 개선(RWA¹ 등) ▲자본시장 육성 ▲국민성장펀드 투자 및 용자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면책 부여 조치 등 생산적 금융 전반에 대한 검사·제재 면책
- [정부·민간]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의·소통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협의체가 산업 발전과 금융을 잇는 가장 실질적인 플랫폼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함. 한편, 6월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 잔액은 지난해 4분기 말 대비 35조6000억원 증가함. 이는 2022년 3분기(직전 분기 대비 56조7000억원 증가)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변화를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기업에 대출을 더 많이 실행한 결과로 풀이함.

산업별로는 ▲제조업 ('25 Q4) +1.2조원 → ('26 Q1) +11.1조원 ▲건설업 ('25 Q4) -2.9조원 → ('26 Q1) +0.4조원 ▲서비스업 ('25 Q4) +9.2조원 → ('26 Q1) +24.0조원 등으로 나타나 직전 분기 대비 증가 전환했거나 확연히 더 가파른 증가폭을 기록함. 특히 제조업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¹ Risk Weighted Assets, 위험가중자산

ESG기준원, '26년 1분기 정기주총 의안분석 결과 발표...상법 개정 인한 '정관 변경' 안건 다수 상정

상법 개정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등 관련 안건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주주권 약화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반대투표 권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월 30일 한국ESG기준원(KCGS)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기주주총회안건 분석 결과를 [발표](#)함.

'26년 1분기 정기주총 의안분석 개요

- 의안분석 대상 기업: '26년 1분기에 정기주총을 개최한 12월 결산 상장법인 473사 (부동산투자회사 제외)
 - 유가증권시장 311사, 코스닥시장 162사로 구성
- 분석 시 참조 기준: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26년 2월 개정)

분석 대상 기업들은 정기주주총회에 총 4172건¹의 안건을 상정했으며, 그중 '임원 선임' 안건이 1569건 (37.6%)으로 가장 많았음. KCGS는 4172건 중 17.3%에 해당하는 723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으며, 이는 전년(14.9%) 대비 2.4%p 높은 수준임. 안건 유형별 주요 특징과 반대 또는 찬성 권고 현황은 다음과 같음.

안건 유형	주요 특징
정관 변경	• 반대 권고율 (16.2%): 1225건 중 199건, 전년(14.1%) 대비 2.1%p 증가 - 상법 개정의 영향으로 상장회사 전자주총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² 배제 금지, 감사위원 분리선출³ 확대 등과 관련된 정관 변경 안건 다수 상정 ▶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사차임기제도' 등 이사임기 구조 변경 안건 증가 ▶ 그 외 기업: 전자주총 배제, 보수한도 명문화⁴, 주총 결의 없이 정관 수정을 통한 이사(감사)의 책임 감경⁵ 제안 등 주주권리 보호 미비 우려가 있는 안건 증가
이사 선임	• 반대 권고율 (17.1%): 1353건 중 231건, 전년(13.8%) 대비 3.3%p 증가 -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 '행정적·사법적 제재'로 인한 반대 사유 비중이 올해 반대 사유 중 2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사외이사 선임' 안건: 회사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우려 사건에서 감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에 반대 권고한 사례가 전년 대비 증가

¹ 이사회 제안으로 한정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²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직 자리의 수만큼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부여된 투표권을 특정한 후보 한 명에게만 몰아서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소액주주들이 뜻을 모아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한 명이라도 당선시킬 가능성이 높아짐.

³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제도.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감사위원의 선임 가능성을 높여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임.

⁴ 대부분의 기업은 정관에 이사의 구체적 보수액을 명시하지 않고, 주총에서 '이사 전원의 보수총액 한도'를 승인받은 후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개별 보수를 정해왔음. 그러나 2025년 대법원은 "이사인 주주는 자신의 보수 결정에 관한 주총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2025.4.24. 선고, 2025다210138판결)함.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고자 이사 보수한도를 정관에 명문화하는 내용의 안건이 늘어난 것.

⁵ [상법 제400조, 415조] 상법 제399조에 규정된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음

안건 유형	주요 특징
이사보수 한도	• 반대 권고율(22.5%): 480건 중 108건, 전년(16.8%) 대비 5.7%p 증가 - 기존의 이사 전원의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사별 보수한도를 구분하여 안건을 상정하는 회사가 다수 등장(16사, 42건)했으며, 이는 이사인 주주가 자신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총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임 ▶ 이 중 과도한 보수한도를 사유로 1건 이상 반대 권고한 기업은 8사(50.0%) - 보수한도 안건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¹ 내용을 함께 기재한 기업은 10사로, 전년(11사)과 유사 - 보수한도 안건과 별도로 RSU, 성과연동주식보상(PSU) 등 주식기준보상 안건을 상정한 기업은 4사 ▶ 장기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가득 조건을 설정하거나 보상체계의 구체적 내용, 주식 부여 기준 및 보상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전체(4사, 4건) 반대 권고함
임원보수 규정	• 반대 권고율(85.7%): 21건 중 18건 - 임원보수규정 제·개정 안건을 상정한 기업은 19사로 전년(2사)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이 중 15사(78.9%)가 규정에 보수한도액을 명시 ▶ 이 경우 향후 주총에서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보수한도가 고정되어 한도에 대한 주주의 통제 권한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² 전체 반대 권고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 반대 권고율(14.7%): 75건 중 11건 - 올해 3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과 같은 새로운 안건 유형이 등장 (본 뉴스레터 2026년 4월호 "금융위, 3차 상법 개정 맞춰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공시 대상 모든 상장사로 확대" 참고) ▶ 11건 중 발행주식총수 대비 과도한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상정하거나 구체적인 목적 없이 보유 계획을 상정해 반대한 경우는 7건
주주제안	• 찬성 권고율(56.8%): 74건(15사) 중 42건 - 주주제안을 상정한 기업 수가 전년(7사, 80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안건 주제도 다변화 ▶ 배당(2건), 정관 변경(26건), 기타비상무이사 선임(7건), 사외이사 선임(18건),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3건), 기타 안건(18건)으로 구성 ▶ 권고적 주주제안이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제안 수단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 중 실제 가결된 안건은 1건에 불과해 단순한 문제 제기의견 표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

KCGS 분석에 따르면 최근 상법 개정이 주주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으나, 일부 기업이 이에 반하여 주주권리를 약화시키거나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의 효과를 축소시키는 안건을 상정함에 따라 올해 주총 반대 권고율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¹ Restricted Stock Unit: 근속연수나 성과 달성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양도 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² 실제로 임원보수규정에 보수한도를 명시한 회사의 대다수는 임원보수규정 안건의 가결을 전제로 당기 주총에서 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별도로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02

해외 업데이트

EU 집행위, 간소화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공식 채택 앞뒀

5월 6일 EU 집행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의 후속조치로 ▲개정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안\)](#)과 ▲소규모 협력사에 대한 정보 요구 제한을 명시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안\)](#)을 [공개](#)하고, 6월 3일 의견수렴을 마무리함.

ESRS 개정 배경

- '25년 2월 [발표](#)된 '옴니버스(Omnibus) I 패키지'에 따라 같은 해 7월 집행위 산하의 독립적인 자문기구인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기존 ESRS('23년 채택)를 간소화한 개정 기준서 초안을 공개해 의견수렴을 실시함. (본 뉴스레터 2025년 10월호 "EU, CSRD 적용 기업 부담 완화 위한 '간소화된 ESRS' 공개초안 의견수렴 완료" 참고)
- '25년 12월 EFRAG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을 집행위에 제출했으며, 집행위가 이번에 보고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 최종 개정 기준서(안)를 발표한 것.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정 배경

- '25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EFRAG가 마련한 중소기업(SME)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기준([VSME](#))을 [권고안](#) 형태로 [채택](#)한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5년 10월호 "EU,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VSME' 채택" 참고)
 - 이번에 발표된 기준 초안은 VSME를 기반으로 하며, 위임법을 통해 공식 기준으로 승격할 예정임.

집행위는 각 기준을 위임법률(안) 형식으로 공개했으며,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음.

ESRS 개정

- 주요 변화
 - 데이터 포인트(data point)¹ 축소: 필수 데이터 포인트 개수를 60% 이상, 전체 데이터 포인트 개수는 70% 이상 줄임
 - 명확성 및 유연성 개선: 공시 요구사항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기업이 유연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개정
 - 중요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 간소화: 기업이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성 평가를 단순화
- 기대 효과: 기업당 보고 비용 약 30% 이상 절감 예상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비적용 기업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정

- 자발적 보고 기준: CSRD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를 수행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가치사슬 상한(Value Chain Cap) 도입: CSRD 적용 대상 기업이 가치사슬 내 협력사 정보를 수집할 때 종업원 수가 1000명 이하인 소규모 협력사에게는 이 기준에서 정한 정보 범위를 초과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음

집행위원회는 이달 중에 두 위임법률을 채택할 예정이며, 이후 2개월²간 EU 의회 및 이사회의 검토를 거친 후 양측 모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최종 확정됨.

¹ 보고서 양식에서 하나의 칸(cell)에 들어가는 값 1개

² 이사회 및 의회 요청 시 4개월로 연장될 수 있음

EU, 수입품 탄소비용에서 'EU 역외 기지불 비용 공제' 기준 구체화

5월 13일 EU 집행위원회가 수입품에 부과되는 탄소비용 산정 시 EU 역외 국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차감하는 세부 기준(안)을 [공개](#)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함.

배경

- '26년 1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이후, EU 수입업자는 CBAM 적용 대상 품목의 탄소배출량(내재배출량)¹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 및 제출해야 함. (본 뉴스레터 2026년 5월호 "EU, 'CBAM 인증서' 가격 첫 공개... '26년 1분기 수입품 탄소비용은 톤당 약 13만원" 참고)
 - CBAM 적용 대상 품목: ①철강 ②전력 ③비료 ④시멘트 ⑤알루미늄 ⑥수소
-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 수량은 ▲EU 배출권거래제(ETS) 무상할당분 및 ▲역외 국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등을 고려해 감액될 수 있으나, 역외에서 '실제로 지불된 탄소가격'의 인정 범위가 주요 과제로 제기돼 왔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공제 대상	▪ EU 역외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탄소가격제도(carbon pricing)²에 따라 해당 제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해 지불한 '실질 납부' 탄소가격 - 공제 가능한 배출 유형: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해당 시) 및 전구체³ 내재배출량에 대해 EU 역외에서 기지불한 비용 - 무상할당분·환급금 등은 제외: 배출권 무상할당분, 탄소가격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 배출량, 부과 기준 미만 배출량, 세율 감면분, 환급·금전 보상 등 실질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일체의 요소를 기지불 비용에서 차감한 것이 '실질 납부' 탄소가격에 해당함
공제액 산정 기준	▪ 내재배출량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짐. - 내재배출량을 실제값(actual value)으로 산정한 경우: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검증을 바탕으로 '실질 납부' 탄소가격을 공제 신청하거나 ▲EU의 기본 탄소가격 기준으로 공제 신청 - 내재배출량을 EU가 제공하는 기본값(default value)으로 산정한 경우: EU의 기본 탄소가격 기준으로 공제 신청
특례: 탄소 크레딧 ⁴	▪ EU 역외 국가의 탄소가격제도상 탄소가격 지불 의무 이행 수단의 하나로 '탄소 크레딧 구매'가 허용되는 경우, 구매 시 실제 지불한 비용도 공제 신청 가능 (단, 국제 크레딧은 별도 요건 존재)
공제 신청 절차	▪ ①역외 사업자(operator)가 품목별 내재배출량에 대한 '실질 납부' 탄소가격을 산정해 탄소가격 보고서를 작성하고 ②독립적 인증인이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해 인증보고서를 발행하면 ③EU 수입업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CBAM 인증서 제출 수량을 줄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기준은 집행위가 직접 채택하는 비입법 법률인 이행법으로 만들어졌으며, 채택 시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

¹ 해당 제품 생산 시 배출된 탄소 총량으로,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을 모두 포함함.

² 탄소세·부담금·수수료 등의 과세 방식, 배출권거래제(ETS) 등의 수단을 포함하며,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섹터의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준수 의무가 부여되어야 함.

³ 어떤 물질대사나 화학반응 등에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특정 물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

⁴ 재생에너지 발전, 산림 조성 등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제거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감축·제거량을 인증하여 발행받는 것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국가별 제도에 따라 탄소가격 지불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함.

G20 금융감독기구, 엔트로픽에 '미토스' 사이버 리스크 직접 브리핑 요청...글로벌 금융안정 이슈로 부상

In Focus

이른바 '미토스(Mythos) 쇼크'로 불리는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의 전례 없는 해킹 역량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개발사 엔트로픽이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¹에 클로드 미토스(Claude Mythos) 모델의 기술적 위험성과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5월 18일 영국 유력 일간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브리핑은 앤드류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영란은행) 총재 겸 FSB 의장의 요청을 엔트로픽이 수락함에 따라 이뤄지게 됨.

엔트로픽은 미토스 모델이 기존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IT 시스템상의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해커들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반 대상의 정식 출시를 거부하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 기업과 JP모건 체이스 등의 대형 금융기관을 비롯한 50여 개 파트너사에만 미토스 프리뷰(preview)² 버전을 제공해 보안 결함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본 뉴스레터 2026년 5월호 "주요국 금융당국, '미토스' 등 최첨단 AI 기반 해킹 위협 대응 강화" 참고)

FSB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기구로, 엔트로픽의 이번 FSB 브리핑은 최첨단 AI 모델이 은행권 사이버 방어망의 취약점을 전문가 수준으로 탐지해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가능성을 점검하고 규제 대응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개별 국가를 넘어 G20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함.

한편, 6월 1일 FSB는 영국 런던에서 총회를 개최해 주요 안건으로 ▲금융시스템 취약성(최첨단 AI 모델의 등장 포함) ▲금융기관의 AI 도입을 위한 건전한 관행 ▲규제 및 감독 관행의 현대화 등을 다루었다고 [밝힌](#).

6월 10일에는 '금융기관의 AI 도입을 위한 건전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발표](#)해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최종 보고서는 10월에 있을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제출할 예정임.

¹ 금융위기 예방 및 대처방안 연구, 국제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대한 국제협력 등을 위해 독일연방은행 총재의 제의로 1999년에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이 모태. 당초 G7을 포함한 12개 회원국 및 IMF 등 10개 국제기구로 구성되었으나 2009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13개국이 신규 가입하면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로 명칭을 개정함. 각국 중앙은행, 재무부, 감독기구 등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회원기관으로 활동함. (출처: 한국은행)

² 정식 출시 전 제한된 대상에게 먼저 공개해 성능 및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는 단계

미국, 새로운 AI 모델 공개 전 정부 사전 검토 체계 확대...빅테크 AI 개발·출시 관행 변화 전망

In Focus

5월 5일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앞으로 구글 딥마인드(DeepMind), 마이크로소프트, 일론 머스크의 xAI가 신규 인공지능(AI) 모델을 대중에 공개하기 전에 정부의 검토를 먼저 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미국 AI 표준·혁신 센터(CAISI)는 상업용 AI 시스템에 대한 표준 개발 및 위험 평가 분야의 민관협력 촉진을 위해 NIST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CAISI의 전신인 AI 안전연구소(AISI)는 2024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미 앤트로픽(Anthropic), 오픈AI와 유사한 성격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미국 유력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CAISI는 “프론티어 AI¹의 역량을 보다 잘 평가하고 AI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배포 전 평가와 표적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한편, 4월 7일 앤트로픽이 주요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 경로까지 설계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 버전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논의가 한층 가속화된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협정 체결과는 별개로 신규 AI 모델 공개 전 검토를 포함한 AI 감독 절차 전반을 논의할 민관협력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본 뉴스레터 2026년 5월호 “주요국 금융당국, ‘미토스’ 등 최첨단 AI 기반 해킹 위협 대응 강화” 참고)

¹ Frontier는 ‘극한, 최첨단, 최전선’을 뜻하며, 프론티어 AI는 이전 세대 AI를 뛰어넘는 복잡하고 정교한 기능을 보유한 AI 시스템으로서 인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모든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범용 AI로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영국·캐나다, 'AI 주권'에 각각 1조원 안팎 투자...한국은 오는 3분기 2.5조원 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착공

최근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주권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의 투자와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캐나다가 각각 '소버린 AI' 프로그램을 발표함.



영국

- 소버린 AI([Sovereign AI](#))¹
 - 4월 16일 영국 정부가 신약 개발, 보다 저렴한 슈퍼컴퓨팅 개발 등의 분야에서 유망한 자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5억 파운드(한화 약 1조원) 규모의 '소버린 AI(sovereign AI)'¹ 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힌](#).
 - 정부 산하에 설치된 소버린 AI 전담 조직(Sovereign AI Unit)은 기존 정부 보조금 방식과 달리 마치 벤처캐피탈(VC)처럼 직접 투자에 나서는 것이 특징임.
 - 혁신적 아이디어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관료적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AI 기업이 영국에서 창업하고 성장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피투자기업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슈퍼컴퓨팅 자원,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지원, 데이터 접근권, 연구개발 자금, 규제 대응 지원 등을 함께 제공할 계획임.



캐나다

- AI 소버린 컴퓨팅 인프라 프로그램([AI Sovereign Compute Infrastructure Program](#))
 - 4월 15일에는 캐나다 정부가 2026/27 회계연도부터 7년간 최대 8억900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9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자국 AI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캐나다의 연구자, 스타트업, 기업이 대규모 AI 컴퓨팅 자원을 자국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해외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취지임.
 - 따라서 데이터는 캐나다 내에 저장되어야 하며 핵심적인 컴퓨팅·저장 인프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계약상의 통제권 또한 캐나다에 있어야 하는 등 일정한 '주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해 지원 자격이 주어졌으며, 6월 1일 신청 접수가 마감됨.

한편, 5월 29일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워 온 'AI 3대 강국 도약'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난 1년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힌](#).

특히 이와 관련하여 5월 11일에는 이른바 'AI 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가 될 '민관합동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컨소시엄)가 확정돼 올해 3분기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202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총 2조5000억원이 투입될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구축되면 국내 스타트업과 학계·연구계는 저비용으로 마음껏 AI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센터에서 개발된 AI 서비스의 세계 시장 진출도 지원할 방침임.

¹ 국가의 디지털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인프라, 데이터, 인력, 비즈니스 네트워크(AI 생태계)를 활용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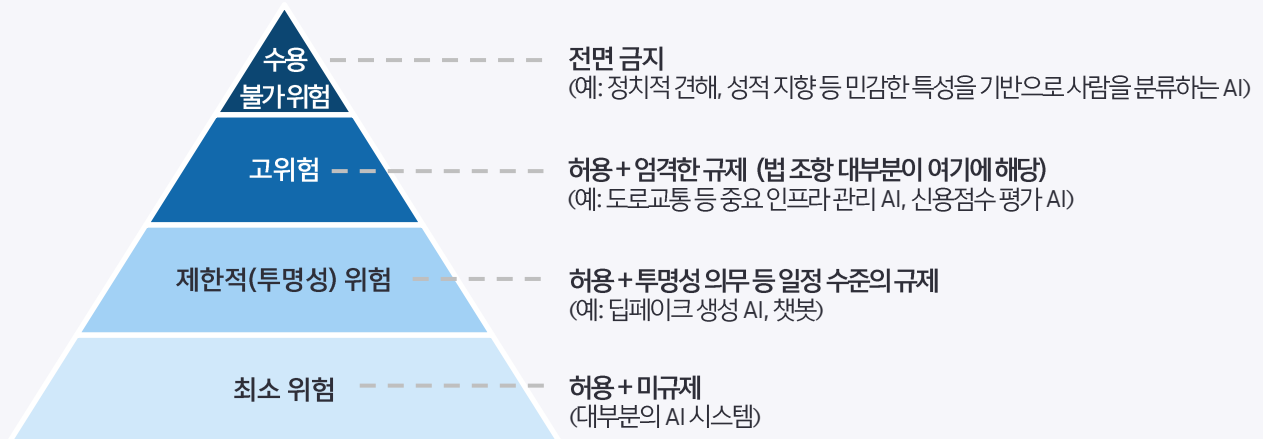
EU 입법기구, '인공지능법' 간소화에 합의...중복 규제 제거하고 의무 준수기한 최대 16개월 연장

5월 7일 EU의 공동 입법기관인 의회와 이사회가 인공지능(AI) 규제 관련 법규 일부를 간소화·효율화하는 법안에 잠정 [합의](#)¹함.

이번 합의는 지난해 11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디지털 규제 간소화 패키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초 오는 8월부터 핵심적인 규정 대부분이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운데 의무 준수기한을 연장하기로 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본 뉴스레터 2025년 11월호 "EU 집행위,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인공지능법 등 디지털 규제 간소화" 참고)

배경

- '24년 8월 1일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 기본법인 EU 인공지능법이 발효됨.
 - 이 법은 AI 시스템의 위험수준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차등적 규제를 적용함.



- 한편, 생성형 AI 등 범용 AI(GPAI)² 모델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①해당 모델의 기술적 특성 등을 설명한 문서와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②EU의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③모델 훈련에 사용한 콘텐츠를 요약해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GPAI가 고위험 AI 시스템에 통합되거나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위험 AI로 간주됨.
- 당초 각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돼 '27년 8월에 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음.
 - ['25.2.2.] 수용 불가 위험 AI 규제 시행 (현재 시행 중)
 - ['25.8.2.] GPAI(생성형 AI 포함) 규제 시행 (현재 시행 중)
 - ['26.8.2.] 고위험 AI 규제, 투명성 의무를 포함한 핵심 규제 대부분 시행
 - ['27.8.2.] 의료기기·기계 등 기존 '[EU 제품 안전 규제](#)' 대상 제품³에 내장된 고위험 AI에 대해, 관련 제품 인증(적합성 평가) 체계 내에서 고위험 AI 요구사항 적용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소속 협상단과 직접 선출된 EU 의회 소속 협상단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단계로, 법안의 핵심은 이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실무적으로는 사실상의 최종 합의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음. 이후 통상 법률·조문 검토 및 공식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됨.

²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화된 AI를 넘어서 인간에 견줄 만한 지능을 갖게 돼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추론하며 성장하는 단계의 AI

³ 인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법과는 별개로 애초에 까다로운 안전 인증(CE 마크 등)을 받아야 EU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인공지능법 주요 의무 준수기한 연장

- 생성형 AI의 투명성 의무: ['26.8.2.] → ['26.12.2.]로 4개월 연장
 - 합성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시스템 제공자가 '해당 콘텐츠는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할 의무
- 일반 고위험 AI 규제: ['26.8.2.] → ['27.12.2.]로 16개월 연장
- 제품 내장형 고위험 AI 규제: ['27.8.2.] → ['28.8.2.]로 12개월 연장

중복 규제 제거 및 부담 완화

- '섹터별 법률 우선주의'를 통한 이중 적합성 평가 요구 방지
 - 의료기기, 완구, 승강기, 수상선박 등 분야별 법령이 인공지능법하의 '산업용 AI 안전성' 관련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행법률(implementing act)¹을 통해 인공지능법의 적용을 일부 제한
 - 이를 통해 기업이 섹터법과 인공지능법 각각의 요구사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부담 제거
- 특히 기계류는 인공지능법 직접 적용 대상에서 면제
 - 기계류 규제법([EU Machinery Regulation](#)) 적용 대상을 인공지능법의 직접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기계류 규제법하에 위임법을 신설해 AI 관련 요구사항을 추가²할 예정
- 중소기업(SME) 규제 완화 장치를 소규모 중견기업(Small Mid-Cap enterprise, SMC)³에 확대
 - 소규모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부담을 겪는 점 고려

기타 합의사항

- 음란물 및 아동 성학대물 생성의 적극적 방지 (신설 의무)
 - 동의 없는 딥페이크 콘텐츠 및 아동 성학대물 생성을 유도·확산하는 데 악용될 위험⁴이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AI 시스템을 명시적으로 금지
- AI의 편향성⁵ 평가 및 완화에 필수적인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 사용 허용 범위를 일부 확대
 - 기존에는 AI 개발사에만 일부 허용했으나, 평가에 필수적인 경우 기업(사용자)에도 일부 허용
- 기업의 규제 준수 지원을 위한 표준 및 가이드라인 제공 강화

이번 합의 내용은 EU 이사회와 의회의 공식 승인 후 법률·조문 검토 절차를 거쳐 수주 내 공식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

¹ EU 의회와 이사회가 적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입법법률(legislative act)의 균일한 시행 여건이 필요할 때 집행위가 채택하는 비입법(non-legislative) 법률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advisory) 또는 심사(examination) 절차를 거쳐 제정됨.

² 제품 내장형 고위험 AI 규제 시행 시점에 맞추어 '28.8.2.까지 도입할 예정임.

³ 중소기업(SME)을 이제 막 넘어선 단계의 기업

⁴ 예: 사용자가 음란물 생성을 위해 예상 가능한 필터링 장치를 우회하여 교묘한 프롬프트를 입력하자 AI 모델이 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 AI를 통해 실제 아동의 사진을 기반으로 부적절한 합성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등

⁵ 예: 채용 심사 AI가 특정 성별을 더 많이 탈락시키거나 대출 심사 AI가 특정 집단에 더 낮은 점수를 주는 경우 등

미 캘리포니아·중국, AI가 밀어내는 일자리에 노동자 보호 움직임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업들의 감원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중국 법원이 각각 이에 대응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판결을 제시함.



미국 캘리포니아

- 5월 21일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 AI가 노동시장에 가져올 경제적 충격에 대비해 정부 각 부처가 90~180일 이내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
 - AI로 인한 해고도 대량 해고와 같이 당사자, 노조, 정부에 60일 전 사전 통보하게 하는 법률 개정 검토
 - 직업 훈련 프로그램 및 재취업 교육을 AI 시대에 맞게 개편 확대하고, 고용 유지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 검토
 - AI가 기업의 채용과 인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 정부 노동시장 보고서에 정기적으로 포함
 - AI가 각 섹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대시보드 구축 (실업보험 데이터 활용)
 - 고실업 지역에는 맞춤형 지원 추진
 - AI가 공익 증진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고, AI 기업 수익 일부를 공익적 AI 활용에 투입하는 방안 검토
 - AI가 가져온 생산성 제고의 혜택이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직원이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직원 지분 참여 등의 모델 확대 검토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AI 도입과 활용을 지원해 생산성과 고용을 동시에 확대하는 정책 추진

이와 관련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도자료](#)에서는 AI로 창출된 부를 자본 형태로 사회에 분배하는 정책 아이디어로 주식 등의 '보편적 기본자산(universal basic capital)'을 거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언급됨.



중국

- 4월 28일 중국 항저우 중급인민법원, AI로 인한 직원 해고 '위법' 판결 [공개](#)
 - 중국의 한 AI 관련 기술기업에서 품질관리 역할을 수행하던 직원의 업무가 AI로 대체되자 회사는 급여를 대폭 삭감한 다른 직무를 제안함. 직원이 거부하자 회사는 조직개편·인력축소를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보상금 지급을 제안함.
 - 직원이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를 신청하자 중재위원회는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더 큰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직원의 주장을 인정함. 이에 불복한 회사는 '25년 8월 항저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으며, 이후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함. 그러나 항저우 중급인민법원도 직원의 손을 들어 최종적으로 해고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림.
- 3대 쟁점과 법원 판단
 - "AI의 직무 대체가 중국 노동법상 정당한 해고의 기준이 되는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예: 위치 이전, 합병 등)'에 해당하는가?" →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 "회사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음을 입증했는가?" →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 "급여가 상당 수준 삭감된 직무 재배치 제안이 합리적인가?" →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항저우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기업은 AI로 인한 효율성 향상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부담해야 하며, 특히 AI에 의한 직무 대체가 자동으로 노동계약 해지를 정당화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함.

03

주목할 간행물



EY: Board Priorities - Moving from what to how



EY가 발간한 이 보고서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이제는 이사회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가 아니라 향후 12개월 및 그 이후를 대비해 주요 이슈를 ‘어떻게’ 다룰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지정학, 혁신, 사이버보안, 지속가능성, 리더십 등이 여전히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으나, 변화의 예측불가성(Nonlinear)¹, 가속성(Accelerated), 변동성(Volatile),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는 이사회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보고서는 이사회 의 우선 과제로 ▲지정학적 위험을 기업 전략 및 운영에 통합할 것 ▲AI 관련 혁신을 우선시할 것 ▲사이버보안을 강화해 재무적 회복탄력성 및 신뢰를 보호할 것 ▲지속가능성을 기업 운영에 내재화할 것 ▲리더십, 기업 문화 및 인재 역량을 고도화할 것 ▲거버넌스를 재구성할 것 등을 제시함.

¹ A와 B의 관계가 선형적(linear) 비례 관계로 일정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비선형적 특성을 의미

담당자 안내

EY한영 Public Policy팀

이동근 부문대표 (파트너)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대표, Public Policy 리더

dongguen.lee@kr.ey.com

Public Policy 뉴스레터 편집팀: 김양희 팀장, 권혜숙 차장, 강태은 과장

EY한영 ESG Impact Hub

박재흠 파트너

EY한영 ESG Impact Hub 리더, 감사부문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 서비스 리더

jaeheum.park@kr.ey.com

뉴스레터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품질관리실 회계기준 김동길 파트너 품질관리실 감사기준 및 제도 정연웅 파트너

I 제작 EY한영 Public Policy 팀 (ey.pp.team@kr.ey.com)

I 뉴스레터 구독 신청 담당 EY 파트너 문의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6 EY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

